

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간 경쟁분야 협력약정

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양 당사자”라고 함)는

각자의 경쟁법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간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을 표현하면서,

경쟁분야에서 양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목적)

1.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며, 상대방의 경쟁정책, 경쟁법 및 그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와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범위)

2.1. 경쟁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에 중점을 둔다.

2.1.1.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경쟁법 및 그 집행에 대한 변동상황,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칙, 경험들과 정보에 대한 상호 교환

2.1.2. 양 당사자간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2.1.3. 양 당사자간 법집행에 관한 상호 협력

2.1.4. 각 당사자의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타방 당사자가 주최하는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기타 다른 행사들에의 참여

2.1.5.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2.1.6. 경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고위급 인사들간 회의 및 실무급 인사들간 상호 교류의 기회 마련

2.1.7.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양 당사자간 합의된 다른 이슈들

### 제 3 조 (예산)

3.1. 각 당사자는 소속 직원이 이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2.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 어떠한 형태의 자금 이동도 요구하지 않는다.

### 제 4 조 (정보교환)

4.1.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 중요한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약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타방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4.2. 정보의 교환은 우편, 전자우편, 가능한 경우 유선으로 이루어 진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가 사용된다.

4.3. 정보의 제공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그 당사자의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4.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조 (통보)

5.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쟁법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5.2.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조사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6 조 (조율)

6.1 양 당사자가 서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우,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법 집행 활동을 상호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 제 7 조 (충돌의 회피)

7.1 양 당사자는 경쟁법을 집행하면서, 조사개시부터 집행활동의 범위, 제재나 시정조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과정에서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7.2.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타방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자기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지하면, 이를 고지 받은 타방 당사자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익과 관련된 주요 진행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 8 조 (개정)

8.1. 이 약정은 상호 합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약정은 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서면 통보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 9 조 (협의)

9.1. 양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락 책임 부서를 지정하는데 동의한다.

9.1.1. 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 국제협력과  
전화번호 : +55 61 3221-8583  
팩스번호 : +55 61 3328-5523  
E-mail : international@cade.gov.br

9.1.2.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전화번호 : +82 44 200 4318  
팩스번호 : +82 44 200 4343  
E-mail : kftc@korea.kr

## 제10조(기간)

10.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0.2.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이 약정의 체결에 관한 내부절차를 이행한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체결에 관한 상대방의 내부절차를 존중한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경제보호위원회는 이 약정의 요약본을 브라질 관보에 게재한다.

10.3.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별도 반대의사 표시가 없으면 3년마다 갱신된다.

10.4.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10.5 이 약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간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 10.6. 이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협력은 각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과 규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의 합리적으로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10.7. 이 약정의 해석, 적용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리고 필요시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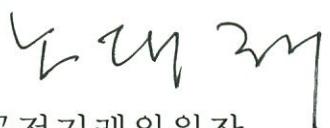
이 약정은 2014년 4월 24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포르투갈어,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브라질연방공화국  
경쟁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제보호위원장  
비니시우스 카르발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